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학술정보의 저작권 관계 분석 연구*

윤종민** · 윤불아*** · 홍유미****

I. 서론

최근 주요 공직자와 사회유명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¹⁾가 연이어 공개되고, 표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커지고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도 연구윤리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³⁾ 관련 자료들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대표적 유형인 “표절”⁴⁾은 ‘연구자 자신의 창작물(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을 다시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거나, 타인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절되어야한다. 이러한 “표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표절예방활동’⁵⁾과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표절을 예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표절예방시스템보다는 표절예방교육을 통한 예방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myoon@cbnu.ac.kr, 043-261-3592

*** 윤불아, 충북대학교 BK21 생명윤리 및 안전법제 연구사업팀 연구원, 1023576@hanmail.net, 043-261-3376

**** 홍유미, 충북대학교 BK21 생명윤리 및 안전법제 연구사업팀 연구원, dbal87@nate.com, 043-261-3376

- 1)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이 있다.
- 2) ‘연구윤리’란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11면.
- 3) 대부분의 연구윤리에 관련된 규정은 연구윤리위반의 형태로 표절을 정의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11-218호, 2011.6.2, 일부개정)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한다.
- 4) 표절은 행위의 대상에 따라(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표절과 자기표절로 유형이 나뉘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출처를 표시하였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출처를 누락하는 경우와 출처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5) ‘표절예방활동’은 ‘연구윤리교육’이 대표적이다. 연구윤리교육은 연구윤리의 의미 및 그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구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6) 표절예방교육은 상당수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 관한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연구”, 2010, 30면 참고.

현재 우리나라는 표절예방을 위하여 표절예방교육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표절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각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표절예방시스템의 활용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표절예방활동에 유용한 표절예방시스템의 의미와 필요성 및 그 구성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표절예방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학술정보의 저작권관계를 분석하여 표절예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관계의 분석과 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II. 표절예방시스템과 주요 학술정보의 저작권관계 분석

1. 표절예방시스템의 의의 및 효과

1) 표절예방시스템의 의미와 종류

‘표절예방시스템’은 어떤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저작물이 타인의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저작물을 표절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되어있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⁷⁾로 구축 및 활용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디지털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즉, ‘표절예방시스템’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전에 미리 구축한 후, 비교 대상 저작물과의 유사도를 측정 및 분석하여 중복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표절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⁸⁾

이러한 표절예방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절예방활동은 세계적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대학에서의 표절예방활동이 공공·민간주도로 확립되었고, 일본·중국은 정부주도로 시작 또는 확산중인 상태로,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⁹⁾ 대표적인 ‘표절예방시스템’으로는 제출된 문서간의 유사도 비교 및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표절여부 검증이 가능한 DOC Cop plagiarism detection, Docoloc, Ephorus, TurnItIn 등이 있다.¹⁰⁾

2) 표절예방시스템의 구축 내용 및 효과

표절예방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표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선행 학술 저작물들을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미리 구축하고, 새로운 학술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종전의 학술저작물을 부정하게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일종이다.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절예방시스템의 검증 데이터베이스¹¹⁾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¹²⁾ 비교하였을 때, 그 구축대상과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7)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조 제19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앞의 연구보고서, 14면.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 위의 연구보고서, 13-28면 참고.

10) 표절예방시스템의 상세한 구축 현황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의 연구보고서, 31-41면 참고.

11) 검증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연구개발결과물로서 표절 검증을 위한 유사도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12)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표절예방시스템 검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대상”은 학술저작물을 중심으로 한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수치(數値) 데이터와 문헌 정보(文獻情報) 데이터로 구성되고, 여러 업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각각의 업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반면 표절예방시스템은 문헌정보 데이터 중에서 학회 학술논문, 대학 학위논문, 국가연구보고서 등의 학술저작물을 주요 구축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또한, 표절예방시스템의 검증 데이터베이스는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에서도 특색이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이 가능한 불특정 다수가 개방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예로,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검색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표절예방시스템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표절예방 여부를 확인하려는 저작자, 연구윤리 관련 업무담당자, 학회·기관 및 연구소의 연구자 등 제한된 범위내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폐쇄적이며, 일방적인 접근만이 가능하다.

표절예방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절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검증을 할 경우, 학술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절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등 표절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연구자 스스로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이나 학회 등에 제출할 경우, 학술저작물을 검증하는 기관이나 학회 등은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분야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대상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개발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의 중복 방지, 최종결과물의 기존 유사 결과물과의 내용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의 계획부터 결과발생의 전 과정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2.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관련 저작권관계 분석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피검증 대상으로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각종 학술저작물을 수집하여야 하고, 수집된 학술저작물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가공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학술저작물을 각 저작물과의 비교 및 검토 대상으로 제공하여 표절여부를 원활히 파악하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학술저작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술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닌 학술저작물 전체가 피검증 대상으로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표절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표절예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타인의 학술저작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즉 해당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수집하여 전자파일로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 등과 같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표절예방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학술저작물을 수집, 가공, 축적, 관리 및 이용함에 있어서는 관련 저작권 침해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보호내용을 살펴보고, 저작권의 정당한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현행법상의 지적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자료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한 자료의 집합체로서, 자료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높인다.

1) 표절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저작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리고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¹³⁾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¹⁴⁾ 또한 저작권은 ‘배타적’ 성격의 권리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 등이 있다.

(1) 복제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⁵⁾¹⁶⁾, 동법 제16조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제는 기존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만 가지고 있으면 저작자의 복제권이 미친다.¹⁷⁾ 이러한 규정을 통해 복제권은 타인이 적법하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하려면 표절예방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피검증 대상으로서 각종 학술저작물이 데이터로 복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사실상 모든 학술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학회, 대학 도서관, 민간 데이터베이스사업자 등 각 학술저작물 보유 기관과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가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제3자인 표절예방시스템의 운영자에게 학술저작물 복제에 대한 허락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여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종래의 방송, 전송, 그리고 새로운 개념인 디지털음성송신은 물론 앞으로 기술발전예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형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⁸⁾ 동법 제2조 7호에는 “공중송신”을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송신의 개념 속에는 방송¹⁹⁾, 전송,

13)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14)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324-325면 참고.

15) 2000년 1월 저작권법 일부개정에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기존 아날로그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복제 개념을 도입하였다.

16) 복제의 개념을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을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행위까지 한정해야 할 것이다. 박성호, 『저작권법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235면.

17) 강신하,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 진원사, 2010, 205면 참고.

18) 송영식 외2인,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0, 265면.

19)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음성송신²⁰⁾이 포함된다.

표절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기한 공중송신권 중에서 전송권(동법 제2조 제10호에서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다. 저작권법상의 전송은 이용자들이 학술저작물에 실제로 접근하거나 접근하여 복제하여 전송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학술저작물이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 올려져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된 때에 전송은 이루어진 것이다.²¹⁾ 그러므로 공중이 표절예방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송”이 충족된다.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에 공중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공중의 학술저작물 접근 여부, 이용 여부, 접근 횟수는 전송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경우,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가 정당한 전송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동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22조).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학술저작물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초록이 없는 학술저작물에 초록을 추가한다거나, 영문이나 한국어로 된 초록을 한국어나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등 일정한 가공을 하여 적절한 형태로 재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가공된 자료가 원자료의 2차적 저작물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4) 동일성유지권

학술저작물의 원문을 표절예방시스템에서 서비스하게 되는 경우 저작인격권 측면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이 문제될 수 있다.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 유지권의 본질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저작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²²⁾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의 운영자가 무단으로 학술저작물 원문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형시키거나, 저작물에 일정한 가공을 하여 저작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왜곡되게 된다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문제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문제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자가 학술저작물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서비스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2조 제19호)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20)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 원문 전자파일 저작권 및 행정절차에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31면.

22) 허희성, 『新著作權法逐條概說』, 범우사, 1988, 79면 참조, 이해완, 앞의 책, 285면 재인용.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93조 제1항).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는 학술저작물을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별 저자와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양도·이용허락을 받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위논문 보유기관, 학회, 민간 데이터베이스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저작권 취득방식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간접적인 저작권 취득방법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가 학회 등과 같은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로부터 적절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많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대부분의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정보화사업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기에 저작권법 6장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책시키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침해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표절예방시스템 관련 저작권 획득 방법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작권 획득방식’에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는 방안’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일정한 방식과 조건 하에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저작권 확보 경로’에 따라서는 ‘학술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얻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확보 방안’과, ‘학술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보유자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학술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집단적이고 간접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은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저작권자의 의사에 의해 양도 및 일부 양도 가능함)과 인격적 이익에 관한 저작인격권(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 불가능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저작재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등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한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학술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아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적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동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권리는 배타적 권리, 즉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준물권적인 성격을 띠지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는 이용에 따르는 채권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의 양도와 같은 준물권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작권 문제의 해소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III.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작권문제 대응방안

표절예방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 해결방식과 소극적 해결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인 해결방식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학술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과, 저작권단체 등이 확보한 학술저작물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이 있다. 소극적 해결방식으로는 확보한 학술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권 제한규정”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즉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 저작권 제한규정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게 하는 방식 세 가지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저작권관계 문제를 접근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대응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을 통한 저작권관계 대응

1)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의 의의와 장·단점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은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가 직접 그들에게 이용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은 이용권한을 얻기 위해서 직접 저작권자에게 이용동의를 받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원칙에 가장 부합하고 학술저작물 공공이용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²³⁾ 그러나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이용자는 일일이 개별 저작권자를 찾아가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이다.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대량일 경우에 모든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힘들고,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직접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대다수의 학술저작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 대학, 연구기관의 저작물들을 자체적인 규정 또는 동의서(협약서)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방식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2012, 36면.

2)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의 운영실태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은 학회,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 등을 통해 소속 회원이나 교직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을 표절예방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단적이고 개별적인 이용동의 방식의 운영 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회 학술저작물의 경우를 보면, 학회가 해당 학술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이용동의를 받는 현황은 양적, 질적 수준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2007년 7월 기준으로 등록된 국내 등재학술지 906종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6종의 등재학술지 중 306개 학술지만이 권리귀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갖추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2%는 학술지의 권리귀속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고, 권리귀속을 명시한 306개 등재학술지의 경우도 77개인 25.2%만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보유하고 있었다.²⁴⁾

또한, 20개 학회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도 i)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학회와 저자 사이의 저작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규정 내에 권리귀속의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회는 55%인 11개 학회에 불과하였고, ii) 학술논문의 권리귀속 양태의 경우를 보면 우선 각 학회마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명칭이 각각 달라 저작자로 하여금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뿐더러, 그 용어 사용조차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술논문 저작권의 권리귀속은 대부분 저작자가 아닌 학회 차원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는 저작자와 학회가 공동 소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iii) 학술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전송권 등의 지분권 귀속 관계의 경우 대부분의 학회는 자체규정 내에 저작권 귀속의 규정을 두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 등을 통하여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그 기존의 자체규정과 저작권양도 동의서 등에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를 한 것인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양도를 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 것인지 일부를 양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지분권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학회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다음으로, 대학 학술저작물의 경우를 보면,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각 대학이 통상 이용허락의 방법을 통해서 학위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에 대해서는 동의서 내에 잘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구축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영리 목적 금지 조항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의 이용기간을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에는 대학 협정기관에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²⁶⁾

국가연구보고서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당 연구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이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공동관리규정 제20조). 따라서 국가연구보고서를 표절예방시스템 운영자가 적법하게 수집·구축 및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보고서의 저작권자인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24) 홍재현,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8, 441-445면.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2012, 39-45면 참고.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2012, 50-54면 참고.

하거나, 성과물 전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수집되어 있는 국가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 현행 규정에서는 공동관리 규정의 이용동의에 관한 조항²⁷⁾을 준용하여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 부처별 표준협약서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⁸⁾

(2)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절예방시스템의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을 이용할 경우, 학술저작물의 수집 및 관리 기관에서 개별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문제를 일부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인 바,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회 학술저작물은 대체로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권 위임 형식을 통해 학회로의 저작권 위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회 중 저작권 양도에 관한 동의서(위임서)를 받는 비중은 매우 낮고, 학회 자체규정 내지 양도 동의서 등에 지분권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내용상의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양도계약 해석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학회 자체규정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판권·지적소유권·저작권 등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저작권법상 용어인 저작재산권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 등을 명칭을 하나로 규격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목적의 제3자 제공 등 개별 지분권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대학 학술저작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용허락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대학교가 저작권을 획득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일반에 대한 사항은 대체로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분권의 명시가 미흡하고 저작권 이용동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협정기관(KERIS) 등 제 3자에 대한 저작권 이용동의가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등에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학이 표절예방시스템 등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관련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제3자 이용허락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보고서는 연구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과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관리 전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제출·등록된 연구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관리규정에서 연구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약의 내용으로 연구개발 관련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자체규정(지침 등)이나 협약서에서는 ‘국가연구보고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가 명시가 미흡하다. 또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별 지침 등에 연구성과 저작물의 공공목적 이용 시 “이용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등

27) 공동관리규정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2012, 55-63면 참고.

공공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국가연구보고서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보고서를 공공목적에 위해 활용한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일종의 법정이용 허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을 통한 저작권관계 대응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작권자를 각각 찾고 이용동의를 받는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거래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 즉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이하 ‘집중관리제도’라 한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의 의의 및 장·단점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 즉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하 ‘집중관리단체’라 한다)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용허락을 대행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집중관리단체는 회원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이용 요금과 조건을 협상하여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협상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집중관리제도”의 장점은 집중관리단체에게 위탁된 저작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이용자가 개개인의 저작권자들에게 이용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단체와의 계약만으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집중관리제도를 활용할 경우, 개별적 이용 동의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단체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하여,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실시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이용방법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법적문제의 발생 소지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거시켜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집중관리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위탁한 저작권, 즉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저작권에 한정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위탁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이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면권리자가 있는 경우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나아가 집중관리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저작권자나 위탁 계약이 만료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2)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의 운영현황 및 이용가능성

(1)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의 운영현황

현행 저작권법은 집중관리제도로써 “저작권 신탁관리업²⁹⁾”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29)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집중관리단체와 협약(계약)을 통하여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술저작물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 1988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총 12개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허가를 받아 신탁관리를 하고 있다.³⁰⁾ 각 분야별로 구분하자면, 음악분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상분야는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방송분야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어문분야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공공콘텐츠분야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뉴스저작물은 한국언론재단이 집중관리단체로서 저작권을 관리 중이다.

(2)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의 이용가능성 검토

현행 집중관리제도의 경우, 표절예방시스템에 필요한 저작물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신탁 저작물이 제한적이고(관련 저작물 중 신탁저작물 비중이 20~30% 정도로 낮다), 고아저작물(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신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용가능한 저작물은 집중관리단체가 위탁받은 저작물에 한정되므로 포괄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집중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이용을 했음에도 휴면권리자가 있거나 신탁단체(집중관리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의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은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작권 문제의 대응방안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집중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북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CL : Extended Collective License, 이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라 한다)”이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상당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집중관리단체가 위탁된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서 까지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이러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저작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

(1)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일부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상당수의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특정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³¹⁾ 이러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회원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휴면권리자의 저작물, 고아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신속하게 해소 가능하다. 즉, 이용자는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 계약을 함으로써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그러나 비회원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관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절권도 부여하고 있으며, 비회원 저작권자의 사용료 청구권을 보장한다).

(2)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방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방안으로는 i) 2011년 4월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제정과 ii)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방안이 있다. 어느 방안이든 새로운 제

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위의 연구보고서, 69면.

31) 유수현,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서비스 실현”,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108면.

도의 도입을 통해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시도한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안은 관련 규정 중 보상금 분배와 관련한 비회원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규정이 북유럽 국가의 규정에 비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의 배타적 성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본 제도의 도입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비교

구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념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정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집중관리단체에게 수탁된 권리뿐만 아니라 수탁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관리단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권리자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집중관리단체
관리객체	회원 저작물	회원 저작물 + 비회원 저작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과 p2p 등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증가 - 다수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개개인이 관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개별적 이용동의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 - 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계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등록 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저작물도 이용 가능 - 집중관리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휴면권리자로부터 이용자 보호 - 고아저작물의 사장 방지 및 이용 활성화 - 권리획득의 가속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요건으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요함 - 저작권자의 권리가 집중관리단체로 이전됨 - 포괄대리 가능 - 모든 권리를 이전하므로 소송당자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관리단체의 상당한 대표성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의 계약이 법에 따라 비회원저작권자 구속 - 비회원 저작권자의 거절권 - 비회원 저작권자의 사용료 청구권
현황	총 12개의 저작권집중관리 단체가 활동 중	확대된 저작권집중허락제도가 규정된 저작권관리사업법이 입법계류 중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2012, 79면.

3.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를 통한 저작권관계 대응

표절예방시스템의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소극적 방안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소위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표절예방시스템을 위한 각종 학술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관한 사항은 2011년 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³²⁾ 도입된 “일반적 공정이용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1)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의 의의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개별적 저작권재산권 제한규정과는 달리 구체적인 이용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어떠한 이용행위이든지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이용행위의 목적 등 몇 가지 일반적인 고려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 또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이러한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학술 저작물의 이용이 “일반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직접적 방안인 개별적·집단적 이용동의를 통한 방법과는 달리,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일일이 저작권 이용동의 또는 협약이나 계약 체결 등을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표절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저작권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의 해석 및 적용기준

(1) 현행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관련 규정

현행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이 일반적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로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재산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포괄적 지침의 성격을 가진다.³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i)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iii)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iv)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에 예시된 기준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³⁵⁾

(2) 미국 공정이용 조항과의 구분 및 차이점

이와 같은 공정이용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서, 공정이용 조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은 공정이용 자체를 정의한 것이 아니고,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요소만을 규정한 것이다. 즉, 규정된 판단요소는 추상적인 핵심기준이므로, 개별적인 경우 공정이용여부는 핵심기준 외에 기타 사항들

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었다.

33) 이해완(2012), 앞의 책, 516-517면.

3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011년 12월 14일, 12면.

3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위의 연구보고서, 112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³⁶⁾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상의 일반적 공정이용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미국 저작권법상의 일반적 공정이용조항 비교

우리나라 저작권법 ³⁷⁾	미국 저작권법 ³⁸⁾
<p>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p> <p>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p>[본조신설 2011.12.2.]</p> <p>※ 시행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p>	<p>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p> <p>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그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p>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p>

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위의 연구보고서, 113면.

37) 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 법률 제11110호.

38)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 and
-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3)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요소 및 해석기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1요소는 “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이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이 영리성을 가진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의 이용행위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해완(2012)에 의하면 영리성을 가지면 언제나 공정이용이 될 수 없고 비영리성을 가지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판례도 “저작물의 이용이 교육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만으로 침해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의 영리적인 성격만으로 공정이용의 인정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³⁹⁾ 또한 공정이용 행위는 생산적인 사용(productive use)에 한정되며, 단순 이용은 제외된다.⁴⁰⁾

다음으로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는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공표된 저작물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 소설 등과 같은 창작적 저작물(creative works)과 같이 저작물이 창작적일수록 복제로부터 더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시사보도 또는 역사물 등의 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s)처럼 사실적, 정보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은 공정이용의 항변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⁴¹⁾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을 인정한다. 절판된 경우와 같이 더 이상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인이 이에 접근하고 이를 유포시킬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므로 공정이용이 허용범위가 넓어지지만, 대규모로 복제가 이루어지면 특히 손상을 받기 쉬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예로 연습용 책, 시험문제, 답안 등이 있다).⁴²⁾

그리고 제3요소인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과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소량을 발췌하여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과 질적 중요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³⁾ 그러나 비록 소량으로 이용된 경우에도 전체 내용 중 매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경우, 원고에게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이용인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부인한다.⁴⁴⁾ 이해완(2012)에 의하면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⁴⁵⁾, 타인의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였다고 하여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3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40)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과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와 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논의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이 생산적인 이용이나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이 되는가 여부이다. 양자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생산적인 이용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원저작물에 자신이 독창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이용을 의미한다(Universal City Studios, Inc. v. Sony Corp. of America, 659 F. 2d 963(9th Cir. 1981)). 생산적인 이용은 원저작물과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인용을 하는 것이며, 단순한 재포장 또는 재공표에 불과하다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생산적인 이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용, 예컨대 원저작물을 단순한 자료로서 인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심미감 또는 새로운 식견을 창조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이용은 공정이용의 원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이 된다(Pierre N. Leval, Nimmer Lectur e: Fair Use Rescued, 44 UCLA L. REV. 1449, 1456 (1997)).

41) Melville Nimmer & D. Nimmer, Nimmer on Copyright, LexisNexis, 13-172, 32. 강신하, 앞의 책, 339면 재인용.

4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위의 연구보고서, 115면 참고.

43) 이해완, 앞의 책, 540면 참고.

44) 전체 20만 단어 중 300 단어를 복제한 경우(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225 U.S. P.Q. 1073(1985)), 100개의 운율(note)과 45개의 단어(word)로 된 시(lyric)에서 4개의 운율과 2개의 단어를 복제한 경우(Elsmere Music, Inc. v. National Broadcasting Co., 482 F. Supp. 741, 206 U.S. P.Q. 1073(1985)), 28분짜리 영화중에서 2.5분을 복제한 경우(Iowa State Univ. Research Found., Inc. v. American Broadcasting Cos., 621 F. 2d 57, 207) 등이 있다.

45) 미국의 통설이다. Paul Goldstein, Copyright Vol. I. Little Brown Company(2nd ed. 1996) 12:64; Melvie B. Nimmer et al., supra 13~181. 이해완, 위의 책, 541면 재인용.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부이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⁴⁶⁾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4요소인 “저작물의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가 손상을 받을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힘들다. 특히 저작권자가 진출하지 않은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허용가능성이 적으며, 잠재적인 시장의 범위는 실제 저작물의 즉각적인 이용이 기대되는 직접적인 시장 외에도, 저작권자가 미래에 이용할 것이 예측되는 간접적인 시장까지도 포함하되,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손실은 실제 손해가 아닌 잠재적인 손해이므로, 손해발생의 입증은 잠재적인 시장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족하다고 한다.⁴⁷⁾

3)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의 활용가능성 검토

일반적 공정이용제도를 활용하여 표절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를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은 저작권자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접근 및 이용의 원활함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므로,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 학술저작물의 이용이 i) 학술 진흥 또는 연구윤리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ii)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에 이용되는 저작물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공공저작물이 대부분이고, 과학·학술 등 창의적인 저작물인 점, iii) 저작물의 이용이 비록 저작물 전체를 수집하여 DB로 구축·운영하는 등의 저작물의 상당부분을 사용하지만 이는 표절예방시스템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 iv) 설사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물의 대외적·영리적 서비스가 아닌 저작물의 표절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내부적 이용에 불과하여,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을 침해하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⁴⁸⁾, 표절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주요 학술저작물의 저작권관계 문제는 ‘일반적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는 적극적 방안으로서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을 통한 해결방법과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그리고 소극적 방안으로서 “공정이용제도”를 통한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개별적 이용동의 방식은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나,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를 찾아가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상당히 비경제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공 학술저작물을 수집·관리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보유저작물을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 저작권 문제의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회나 대학 등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관련 내부규정이나 이용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권리 조항이나 취지에 적합

46) E.g.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 2d 1510 (Cal, 1992); Belmore v. City Pages, Inc. 880 F. Supp. 673 (D.Minn.1995). 이해완, 위의 책, 541면 재인용.

4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위의 연구보고서, 116면.

4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위의 연구보고서, 131면.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단체 등이 확보한 학술저작물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집단적 이용동의 방식으로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권리자와의 개별적인 이용계약 없이 단체를 통하여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용동의 방안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 이용에 관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하에서 저작권 단체가 이용허락 할 수 있는 권리범위는 위탁된 저작물에 한정되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적인 저작물 확보를 위해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중인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자격이 있는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수탁된 권리뿐만 아니라 수탁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회원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나, 집중관리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휴면권리자의 저작물, 고아저작물 등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어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권 제한규정 또는 일반적 공정이용제도의 활용 방안이다. 종전 저작권 제한규정으로는 표절예방시스템을 위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곤란했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 일반적 공정이용조항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공정이용 조항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일반적 공정이용제도의 도입에 의해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를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표절예방시스템의 그 이용방식과 목적을 살펴보면 구축에 이용되는 저작물은 창의적인 공공저작물이 대부분이고, 학술진흥 또는 연구윤리의 확보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표절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내부적 이용에 불과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표절예방시스템은 공정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절예방시스템을 활용한 검증활동은 표절예방효과의 증대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복 연구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학술진흥 및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학술정보의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한가지의 방식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는 것 보다는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절예방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 및 우리 사회 전반의 표절행위가 근절되도록 연구윤리 의식을 향상시킨다면 그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연구”.
- 송영식 외2인(2010),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 유수현(2010),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한국정보관리학회.
- 이해완(2012),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 박성호(2006), 「저작권법 이론과 현실」, 현암사.
- 강신하(2010),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 진원사.
- 송영식 외2인(2010),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6), “학술정보 원문 전자파일 저작권 및 행정절차에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허희성(1988), 「新著作權法逐條概說」, 범우사.

홍재현(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Thomas Rogers · Andrew Szamoszegi(2010), “Fair Use in the U.S. Economy”,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Melville Nimmer & D. Nimmer, Nimmer on Copyright, LexisNexis.

Paul Goldstein, Copyright Vol. I. Little Brown Company(2nd ed. 1996).